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2023.	
연	월	일	(제	회)

의 결 사 항

개 발 제 한 구 역 의 지 정 및 관 리 에 관 한 특 별 조 치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671호, 2023. 8.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신축 허용, 농업인용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도로변 제설시설 설치범위 확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1.18. ~ 2024.1.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9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나.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 안에 위치한 가목의 시설(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진입로설치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이 농지(경지 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지 않은 농지로 한정한다)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는 허용하지 않으며, 바닥면적 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을 설치하는 행위제40조제4항제2호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제25조제4항"으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연장, 분할납부 허가 또는 물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 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의 통보
-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인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부과
- 4.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의 접수
- 5. 제3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및 매수가격의 통보
-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0항 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바목가) 중 "제2조의2제4항"을 "제2조의2제7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아목나)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다목의 민간정원"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일반국도·지방도에 설치하는 제설시설"을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제설시설(개발제한구역외 지역에 해당 도로관리청이 활용하기 위한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표제5호다목에 라)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제5호라목에 라)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제5호라목2)나) 전단 중 "인접한"을 "해당

시설의 대지와 맞닿아 접한 토지 또는 폭 12m 미만의 도로, 구거, 소하천 등 소규모 선형시설로 분리된 토지(해당 시설과의 연결을 위해 추가적인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설과일체의 부지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인접한"으로 하며, 같은 표제5호아목라) 본문 중 "10년이상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10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로 한다.

- 라) 가) 후단, 다) 및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축한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신축할 수 있다.
- 라) 나) 후단, 다) 및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축한 근린 생활시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신축할 수 있다.

별표 3에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 법률 제1092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에 적합하다고 국방부장관이 확인하여 고시한 건축물(토지의 형질변경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국방·군사시설 부지 내에서만 가능하며, 해당 시설의 전체 형질변경 면적 범위 내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매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41조제2항부터 제4 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 사무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승계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영	
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9
당하는 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u><신 설></u>	나.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 안에 위치한
	<u>가목의 시설(개발제한구역</u>
	이 아닌 지역에 진입로 설
	치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
	역에 설치할 수 밖에 없다
	<u>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u>
	<u>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
<u>나</u> . (생 략)	<u>다</u> . (현행 나목과 같음)
9의2. ~ 18. (생 략)	9의2. ~ 18. (현행과 같음)
제19조(신고의 대상) 법 제12조제	제19조(신고의 대상)
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의2. (생 략) <신 설>

8. ~ 13. (생 략)

제40조(권하의 위임) ① ~ ③ (샛 | 제40조(권하의 위임) ① ~ ③ (현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 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담금(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 접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 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경우 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은 위 임하지 아니한다.

1. ~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지(경지 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지 않 은 농지로 한정한다)에 이동 식 간이화장실(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는 허용하지 않으며, 바닥면적 5m²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8. ~ 13. (현행과 같음)

행과 같음)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	_	-	-	_	-	_	_	-	_	-	-	_	_	-	_	_	-	_	-	-

1. (생 략)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가

3. • 4. (생 략) ⑤ ~ ⑨ (생 략)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2. 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제25 조제4항 ----- 연장, 분할 납부 허가 또는 물납 -----

3. • 4. (현행과 같음)

(5) ~ (9) (현행과 같음)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 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 임한다.

- 1. 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 1항에 따른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매수 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 의 통보
-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인에 대한 감정평가비용 의 부과
- 4.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 수청구서의 접수
- 5. 제3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 가 의뢰 및 매수가격의 통보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0항 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신 설>

제41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41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탁한다.
- 1. 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 1항에 따른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의 통보
-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인에 대한 감정평가비용 의 부과
- 4.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의 접수
- 5. 제3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및 매수가격의 통보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경우에는 그 처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괴 같음)

<삭 제>

<삭 제>

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분기별로 분기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1천분의 5와 감정수수료・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기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u><삭 제></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노새도시	771
ュェルマー	무색도시	4

연 락 처 (044) 201 - 3745